

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장종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60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14.

발 의 자 : 장종태 · 이광재 · 서왕진
강준현 · 신정훈 · 김준혁
진선미 · 임미애 · 김성희
민병덕 · 이강일 · 노종면
이정문 · 조승래 의원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대형 물류창고 화재로 막대한 인명·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, 현행법은 물류창고업 등록 시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계획서의 이행의무와 이행 여부를 확인·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계획서가 형식적인 제출에 그칠 우려가 있음. 최근 인천 구광 물류센터 화재에서 지적된 사항도 상당 부분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통해 사전에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이었던 만큼, 계획서의 실질적인 이행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물류창고 내 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기준을 마련하고, 물류창고업자에게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의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한편, 관계 행정기관이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

여 물류창고의 화재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21조의4 신설 등).

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제21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제18조제1항 중 “제8호”를 “제9호”로 한다.

제21조의4부터 제21조의10까지를 각각 제21조의5부터 제21조의11까지로 하고, 제2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의4(물류창고 내 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기준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창고 내 화물적재시설 등 시설의 설치·관리 및 화재안전 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화재의 예방과 화재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물류창고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 관리기준을 준수하고,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한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이행하여야 한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,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 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와 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, 이를 준수하거나 이행하지

아니한 물류창고업자에게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 관리기준과 제3항에 따른 확인 및 시정 명령의 절차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1조의6(중전의 제21조의5)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제21조의4제1항”을 “제21조의5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제21조의4제6항”을 “제21조의5제6항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제21조의4제8항”을 “제21조의5제8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21조의4제4항”을 “제21조의5제4항”으로 한다.

제21조의7(중전의 제21조의6)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제21조의4제2항”을 “제21조의5제2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제21조의4제8항”을 “제21조의5제8항”으로 한다.

제21조의9(중전의 제21조의8)제2항 중 “제21조의7”을 “제21조의8”로 한다.

제21조의10(중전의 제21조의9)제1항 중 “제21조의10”을 “제21조의11”로, “제8호”를 “제9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등록의 취소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·제4호·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	제17조(등록의 취소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1. ~ 7. (생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8. 제21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8. (생략)	9. (현행 제8호와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8조(과징금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제17조제1항 각 호(제1호·제4호·제7호 및 <u>제8호</u> 는 제외한다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그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	제18조(과징금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9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
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②·③ (생략)

<신설>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21조의4(물류창고 내 시설에 대
한 화재예방 기준) ① 국토교통
부장관은 물류창고 내 화물적재
시설 등 시설의 설치·관리 및
화재안전 관리에 관한 기준을
마련하는 등 화재의 예방과 화
재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를 위
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
한다.

② 물류창고업자는 제1항에 따
른 화재안전 관리기준을 준수하
고,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제
출한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이
행하여야 한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, 해양수산부
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1항
에 따른 화재안전 관리기준의
준수 여부와 제2항에 따른 화재
안전 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
확인할 수 있으며, 이를 준수하
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물류창고
업자에게 필요한 시정을 명할
수 있다.

	<u>④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 관리 기준과 제3항에 따른 확인 및 시정명령의 절차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
<u>제21조의4(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 등) (생략)</u>	<u>제21조의5(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 등) (현행 제21조의4와 같음)</u>
<u>제21조의5(인증의 취소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.</u>	<u>제21조의6(인증의 취소) ① -----</u> ----- <u>제21조의5제1항-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. ----- ----- --.
1.·2. (생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3. <u>제21조의4제6항</u>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	3. <u>제21조의5제6항</u>----- ----- -----
4. <u>제21조의4제8항</u>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	4. <u>제21조의5제8항</u>----- ----- --
5. (생략)	5. (현행과 같음)
② 스마트물류센터의 소유자 또는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인증	② ----- -----

이 취소된 경우 <u>제21조의4제4항</u>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, 인증마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.	----- <u>제21조의5제4항</u> ----- ----- --.
<u>제21조의6(인증기관의 지정 취소)</u> 국토교통부장관은 <u>제21조의4제2항</u>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 1. (생략) 2. <u>제21조의4제8항</u>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. ~ 6. (생략)	<u>제21조의7(인증기관의 지정 취소)</u> ----- <u>제21조의5제2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<u>제21조의5제8항</u>----- ----- -- 3. ~ 6. (현행과 같음)
<u>제21조의7(재정지원 등)</u> (생략)	<u>제21조의8(재정지원 등)</u> (현행 제21조의7과 같음)
<u>제21조의8(보조금 등의 사용 등)</u> ① (생략) ② 국토교통부장관·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<u>제21조의7</u>에 따라 보조 또는	<u>제21조의9(보조금 등의 사용 등)</u>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 <u>제21조의8</u>-----

용자 등을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·감 독하여야 한다. ③ (생 략) <u>제21조의9(과징금)</u> ① 국토교통부 장관,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·도지사는 물류창고업자가 <u>제</u> <u>21조의10</u>에 따라 준용하는 제17 조제1항 각 호(제1호·제4호· 제7호 및 <u>제8호</u>는 제외한다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그 사업의 이 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을 갈 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을 부과할 수 있다. ②·③ (생 략) <u>제21조의10(준용규정)</u> (생 략)	----- ----- -----. ③ (현행과 같음) <u>제21조의10(과징금)</u> ① ----- ----- ----- <u>제2</u> <u>1조의11</u>----- ----- ----- <u>제9호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②·③ (현행과 같음) <u>제21조의11(준용규정)</u> (현행 <u>제21</u> <u>조의10</u>과 같음)
---	---